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0
------	------

2023.12.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이민옥 의원(찬성자 1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민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일자리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9조의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8조)

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의 존속 기한(2023년 12월 31일)을 5년간 (202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근거 법령이 폐지된 조례의 조문 정비를 위해 발의되었음.

나.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일자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이하 “일자리 조례”)에 근거하여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일자리 사업의 지원,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제·노동계·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31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음.(별첨차료1)
- 그리고 위원회에는 10명의 청년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원회¹⁾를 두고 있으며, 제4기 위원회부터(2021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일자리위원회 전체 회의는 줄이고 일자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 최근 3년간 일자리위원회 개최실적 >

연도	회의개최일시		회의 안건
2021	일자리위원회	'21.3.30. (서면)	2021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보고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자문
		'21.12.29 (영상)	2021년 서울시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보고
	실무위원회	'21.3.25.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21.3.30.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2022	일자리위원회	'22.12.19	'22년 일자리사업 주요 성과 및 '23년 주요 일자리사업 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실무위원회	'22.04.13	市 청년일자리 사다리 정책 설명 및 2022년 하반기 신규 청년 일자리 정책 발굴
		'22.04.14	기술교육원 혁신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서울시 직업훈련 기관간 효율적 위계 정립 및 연계방안 논의 등
		'22.10.25	기술교육원 혁신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립준비청년 특별패키지사업 추진계획 보고
		'22.10.28	서울시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2023	실무위원회	'23.6.28	2023년 서울시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23.09.01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 추진현황 등 보고 및 논의

1) ▶ 청년일자리 실무위원회, ▶ 직업교육훈련 실무위원회

-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²⁾에서 자문기관이나 위원회 설치 시 관련 조례에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에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임.
- 서울시가 2024년 경제정책실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2,496억 3백 만원을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회복, 국제 경제환경 변화 대응, 4차 산업 혁명 대비 등 일자리 예산에 편성한 만큼 일자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필요성은 높아지는 추세라 하겠음.
- 또한 최근 3년간 일자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사업,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서울기술교육원 운영 관련 정책 제언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 관련 정책 자문이 필요한 사업이 산재 되어 있는 상황임.(별첨자료2)
- 이러한 일자리위원회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종합적 결과 도출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법적 존속기한 허용범위인 5년 연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18조제2항은 동 조문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2016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① 생략 ②삭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 국회에서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폐지되고 관련 조문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2016.3.3.)된 바 있음.

< 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

제안일	세부사업명	대표발의
2013.12.10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강창일 의원
2014.04.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의원
2014.09.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 의원

- 또한 같은 법 시행령도 2016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장기간 개정이 누락 되어 폐지된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있어 그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안 제18조제2항은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18조제2항을 삭제하더라도 동 센터에 대한 근거는 2020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안 제18조제2항의 삭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5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이민옥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성준, 김지향,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신복자, 왕정순, 이영실,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일자리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9조의2)
-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번호

2023101600000040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민욱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2.10.1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변경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126,000천원(연평균 25,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25,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발생
- 같은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따라 일자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대 인원인 30명으로 구성한다고 전제
-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제1호(서울시 일자리분야 과장급이상 공무원)와 제2항제2호(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2항제5호(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따른 위원은 각 1명으로 하고 나머지 27명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전제
- 같은 조례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 따라 정기회는 2회, 임시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여 연간 총4회 개최한다고 전제
- 회의시 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한다고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26,000천원(연평균 25,200천원)

- 총비용 =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위원회 존속기한 변경 (제9조의2)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소계(b)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 총 비용(b-a)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 126,0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108,000천원+18,000천원

- 참석수당 = 108,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4회×5년

= 200천원×27명×4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최대 구성인원 30명 중 서울시 일자리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각 1명을 제외한 27명만
계산

- 업무추진경비 = 18,0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4회×5년

= 30천원×30명×4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추계세제팀장
주 무 관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이정수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